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도권 · 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격차해소산업 지원 등〉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16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4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8
2. 조문별 검토	10
가. 제명 및 총칙(안 제1조~제5조)	10
나. 격차해소산업 정책 추진체계(안 제6조~제8조)	17
다. 격차해소산업 행·재정적 지원(안 제9조~제18조)	21
※ 참고자료	2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경태의원 등 18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31.
3. 회부연월일 : 2024. 11.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그동안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과 자본, 일자리 등으로 인한 차이가 인구이동과 지역 간 격차를 발생시켜 비수도권 지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인구 유출입에서도 수도권이 상위 지역을 비수도권은 하위 지역을 차지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등의 조화로운 배치 차원에서 비수도권으로 산업을 유치하여 인구 유입을 늘리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청년층 인구의 중요성,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수요를 고려한 취업격차 해소 대책이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

이에 청년세대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 체계적인 대책을 토대로 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청년세대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청년의 운택한 삶, 국가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격차해소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하여 5년 단위로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를 비수도권 지역의 주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격차해소산업의 유치, 발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격차해소산업의 유치함에 있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마. 국가는 격차해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 산업 관련 우수한 인

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함(안 제13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 격차해소산업 사업자가 전력 사용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전력을 이용하도록 권고함(안 제16조).

사. 격차해소산업의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등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고용 및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¹⁾, 특히 취업과정에서 청년 세대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경기침체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2년 지역별 청년(15~29세)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2023. 8.)에 따르면 수도권 청년 고용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활동·

1)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

○ (생산) 수도권-비수도권 GRDP 격차 확대('10년 $\Delta 1.2\%p \rightarrow$ '21년 $5.6\%p$)

○ (고용)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21년 기준)

○ (기업)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22년 기준)

○ (인구)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거주('22년 기준)

자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신생기업 수가 많아 다른 지역보다 청년들에게 제공한 일자리 기회 자체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표 1] 2024년 3분기 지역별 청년고용률

(단위: %)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청년고용률	46.4	50.6	46.7	36.6	49.2	38.8	44.2	40.8	36.9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년고용률	49.9	50.2	49.2	43.3	38.0	37.0	42.6	37.0	40.4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청년고용률

[표 2] 2023년 수도권 활동·신생기업 수 비중

(단위: 개, %)

지역	활동기업	신생기업
전국	7,538,736	955,941
수도권	4,011,229	527,520
(비중)	53.2	55.2
서울특별시	1,530,152	182,462
인천광역시	420,566	60,804
경기도	2,060,511	284,254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통계

이에 따른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중점산업”인 격차해소산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반도체 등의 미래 신산업·첨단산업(이하 “첨단산업 등”)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 비수도권 지역에 유치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격차해소산업에 대해 산업기반시설 조성, 인력양성 및 확보 등을 지원하고, 이를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해당 산업은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하여 산업입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그 외에도 청년근로자 등이 비수도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및 학교 등 생활기반도 함께 개선하고자 하므로 국가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정안에서 예시된 격차해소산업 분야는 대부분 각 분야를 진흥하려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참고1 참조),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산업(참고2 참조) 등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인력양성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음.

그리고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역특화산업²⁾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존 법률상 지원 대상 및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2) 6.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다음으로, 제정안은 경제적 목적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미래 산업·첨단산업을 비수도권에 유치하고자 하는데,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인지 아울러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조세감면, 청년근로자 주택공급우대, 학교설립지원,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관련 부처가 기존 법률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동 제정안 심사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의 법률 제명(題名)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
소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총 17개 조문과 부칙(시행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서는 동 제정안의 목적, 정의·적용대
상, 국가·광역 지방자치단체 의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총칙적
내용을 규정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계획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국
무총리 소속으로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조세감면, 재정지원 및 각종 기반조
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표 3] 제정안 목차

조 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대상)

조 문
제4조(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격차해소산업 발전 실행계획의 수립)
제8조(격차 해소 산업 관련 기구)
제9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제10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제11조(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제12조(격차해소산업의 기업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제13조(인력의 양성 및 확보)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5조(학교의 설립 등 지원)
제16조(친환경에너지 사용 등)
제1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2.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및 총칙(안 제1조~제5조)

1)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제정안의 제명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고, 안 제1조는 청년세대가 비수도권 지역에 정주하도록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적인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

[표 4]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윤택한 삶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세대가 비수도권 지역에 정주하도록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적인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제명은 청년세대가 비수도권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기 위해 “취업격차 해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목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적인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참고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³⁾ 역시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3)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정의(안 제2조) 및 적용대상(안 제3조)

안 제2조(정의)는 수도권, 비수도권 및 격차해소산업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적용 대상)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주기를 규정하고 격차해소산업 외 취업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표 5]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2. “비수도권”이란 제1호의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를 말한다. 3. “격차해소산업”이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중점산업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 등을 통하여 지역 간 취업 및 발전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신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현저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메타버스 ICT,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을 적용받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법 시행 시점 당해 연도 이전 5년 중 3개년 이상 인구의 순감소 광역자치단체를 의미하고, 해당 지역은 5년마다 선정한다. ② 격차해소산업 이외에 취업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정안은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해소산업을 정의하고 비수도권 지역 선정방식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그대로 정의하였으나, “비수도권”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에서도 안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정의되며, 안 제3조는 5년마다 인구감소추세인 시·도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은 일자리 여건 및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최근 5년간 인구 수 순증감 실적만을 기준으로 선정되고, 5년마다 지원 여부가 재결정되므로 첨단산업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법문언 중 “법 시행 시점”은 시행일, 지역 재선정 기준시점, 현재 등 표현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격차해소산업”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한 중점산업”으로 정의하고, ①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 등을 통하여 지역 간 취업 및 발전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②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신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메타버스 ICT,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을 포함”하도록 예시하였는데,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등을 위주로 비수도권에 유치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기존 법·제도와 유사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 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표 6] 격차해소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지역특화산업간 비교

구분	격차해소산업	지역특화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근거 법률(안)	제정안 제2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4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
지정주체	산업부	시·도	산업부
지정시 고려요소	△지역투자유치 및 고용 창출 통해 지역간 취업·발전격차 해소 △균형발전과 미래신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국가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 기여도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 △지역 발전역량 강화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 △연관산업 파급효과

구분	격차해소산업	지역특화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내용	△조세특례 및 재정지원 △산업기반시설 조성 △인력양성 △예타특례, 산업입지 입주 특례	△지역특화산업 구조 고도화 △투자유치·집적·기반 확충 시책 추진 △지원대상 사업 선정, 예산지원	△특화단지 지정·지원 △산업기반시설 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예타특례, 조세특례
선정주기	5년	x	x

그 외에 예시된 산업 분야별로도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기존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참고 1 참조)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격차해소산업 이외에 취업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非격차해소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언급은 추후 없으므로 대통령령으로 해당 산업을 별도로 정할 실익은 낮은 것으로 보임.

3)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4조)

안 제4조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격차해소산업의 유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표 7]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4조(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속적인 균형발전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격차해소산업의 유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모두 격차해소산업의 유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수도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경기도)와 비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해소산업 유치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가 부여되는 측면이 있음.

4)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5조)

안 제5조는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격차해소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격차해소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

[표 8]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격차해소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격차 해소 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특별법적 성격임을 명확하게 함. 다만, 단서조항에서 다른 법률에 사업자 및 격차해소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

나. 격차해소산업 정책 추진체계(안 제6조~제8조)

안 제6조는 정부가 5년 단위로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7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격차해소산업 발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안 제8조는 기본계획·실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주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함.

[표 9]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6조(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에 격차해소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하여 5년 단위로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격차해소산업의 광역자치단체에 유치, 발전,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기본 방향 2. 제1호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정비, 재정·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격차해소산업 관련 창업 및 우수 인재 확보에 관한 사업 4.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격차해소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관련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격차해소산업 발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격차해소산업 발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격차 해소 산업 관련 기구) 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와

제정안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주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담당 업무를 지원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격차해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부처 규제 일원화 및 인허가의 제 확대 등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3. 격차해소산업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격차해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특례 제공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격차해소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격차해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 중 1인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 및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관련 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 및 산하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 제정안은 격차해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격차해

소산업 유치·발전·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기본계획·실행계획을 지역 특성·여건에 적합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⁴⁾,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의절차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⁵⁾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제정안과 유사한 입법목적을 가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이미 지역균형발전 전반을 포괄⁶⁾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4) 지방시대위원회 의견

-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으로 산업을 유치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공감
- 다만,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지방이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지방시대 정신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체계 변경 건의

5)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실행계획이 지역 특성·여건에 부합하게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
- 기본계획의 시행 중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획 변경 절차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 필요
-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도 필요

6)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③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음으로,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 및 산하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주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고자 함. 이에 따라 소속과 실제 설치 기관이 불일치하게 되어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24년 6월말 기준 국무총리 소속 58개 위원회 중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경우는 없음⁷⁾.

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7조에 따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고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기존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점⁹⁾을 고려하면 기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자료: 「2024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행정안전부(2024. 9. 19.) 간행물

- 일반적으로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10개 행정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 48개 자문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58개 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이다.

8)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7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격차해소산업 행·재정적 지원(안 제9조~제18조)

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에 격차해소산업을 효과적으로 유치·발전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

안 제9조는 일반회계 외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격차해소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격차해소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재정지원 또는 자금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용수공급·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2조는 격차해소산업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신·증설, 이전·창업 등을 하는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4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고(제1항), 격차해소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세대 근로자에게 주택공급시 우대하도록 함(제2항).

안 제13조는 국가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록 하고, 안 제14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안 제15조는 격차해소산업지역에 학교 설립 등이 필요한 경우 국가 등이 이를 우선적·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16조는 격차해소산업 사업자가 전력 사용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친환경 전력을 이용하도록 권고함.

안 제17조는 국가가 격차해소산업 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안 제1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격차해소산업 기업 등이 산업단지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함.

[표 10]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9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일반회계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을 통하여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격차해소산업의 기반 및 생산 시설의 조성 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제10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격차해소산업의 유치 및 발전,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대

제정안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격차해소산업의 유치, 발전,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업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격차해소산업의 광역자치단체에서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격차해소산업의 광역자치단체에서의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격차해소산업 기업 등의 해당 산업 및 기반 시설의 조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 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융자와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해소산업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사업 시행의 일정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2조(격차해소산업의 기업 및 청년근로자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차해소산업 관련 기업 등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해당 산업의 신설·증설과 이전, 창업 등을 할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에 소재하거나 소재할 예정인 격차해소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세대 근로자에게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해서 공급방법, 입주자관리방법 및 입주자 자격확인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해당 주택의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3조(인력의 양성 및 확보) ① 국가는 격차해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 산업 관련 우수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격차해소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격차해소산업 관련 직업훈련,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관련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격차해소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격차해소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격차해소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격차해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의 설립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격차해소산업 지역에 학교 설립 등이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하고, 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인가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친환경에너지 사용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무탄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격차해소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전력 사용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친환경 전력(이하 “친환경에너지”라 한다)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사업자의 친환경에너지 사용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등에 대하여 친환경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정안

④ 그 밖에 친환경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격차해소산업의 광역자치단체에서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격차해소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2. 제13조에 따른 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사업 추진
3.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업 추진
4. 그 밖에 격차해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격차해소산업 기업 등의 우선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건, 절차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에 의할 경우 기반·생산시설 조성, 인력양성,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격차해소산업이 비수도권에 유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및 산업단지 입주특례를 통해 격차해소산업을 보다 조속하게 집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청년근로자 주택공급 확대, 학교설립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청년세대 인구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일부 행·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관련 부처는 기존 법률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

우선, 조세감면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규정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다음으로, 청년근로자 주택공급우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기준의 예외를 두는 것이 청약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교설립지원에 대해 교육부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감의 재정지원 등과 중복소지가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외에 개별 법률에서 상이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므로, 동 제정안 심사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

참고1

격차해소산업 분야별 관련 지원법률 현황

산업	법률	추진체계	주요 지원내용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법	-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 보호 기본계획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 특화단지 지정·지원 - 기반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국회 심사중)	-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 국가전력망 설치·확충, 예타 특례 -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 세제지원,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
인공지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6.1.22. 시행예정)	- 인공지능 기본계획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실용화 지원 -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메타버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정보통신융합법)	- 전문인력 양성 - 연구개발 지원 등 - 가상융합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문화 콘텐츠 관광산업	콘텐츠 산업진흥법	-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 콘텐츠제작 활성화 시책 -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 세제 지원
	관광기본법	- 관광진흥계획 - 국가관광전략회의	- 관광여건 조성 및 지속가능한 관광시책 -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관광진흥법	-	- 관광산업 진흥 사업 -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 관광홍보, 관광자원 개발

* '기후테크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연관산업을 총칭(탄소중립녹색성장위,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中)하는 개념으로, 연관산업 범위가 광범위하여 관련 법률도 특정하기 어려움(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탄소포집, 모빌리티, 자원순환, 대체식품, 우주·기상, 기후적응, AI데이터·금융 등)

참고2

국가첨단전략산업

※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별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 관련)

① 반도체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첨단 메모리반도체 산업 : 16나노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 : 픽셀 0.8 μ m 이하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14nm 이하급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디자인서비스·SW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3	첨단 패키징 산업 : FO-WLP, FO-PLP, FO-PoP, SiP 등의 방식으로 반도체 패키지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4	연관산업(자동차, 통신, 사물인터넷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반도체 산업 : 실리콘·화합물 기반의 전력반도체(Discrete, Power IC, Module 등), 이동수단용 반도체(MCU, ECU, Smart Sensor 등)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디자인서비스·SW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② 이차전지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 에너지밀도가 280Wh/kg 이상인 파우치형 배터리, 252Wh/kg 이상인 각형 배터리, 28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이하의 원통형 배터리, 26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초과하는 원통형 배터리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고용량 양극재 산업 : 니켈함량이 80%를 초과하는 양극재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3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 : 600mAh/g 이상 초고성능 전극(실리콘그래파이트 복합음극, 황 양극, 리튬금속 음극) 또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전고체전지, 리튬황전지, 리튬금속전지)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4	배터리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 : 배터리 광물의 제련·정련, 사용후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및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BaaS) 등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고용량 양극재 산업,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과 연계된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③ 디스플레이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산업 : AMOLED 패널(3,000ppi 이상의 초소형, 500ppi 이상의 중소형, FHD 이상의 중대형, 4K 이상의 대형 디스플레이)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친환경 퀀텀닷(QD) 소재 패널 산업 : 반치폭 40nm 이하이고 색재현율 REC2020 기준 90% 이상인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3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산업 : 초대형 칩크기 30 μ m 이하, 모바일 칩크기 20 μ m 이하, 초소형 칩크기 5 μ m 이하의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4	나노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산업 : 크기 1 μ m 이하 나노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5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하여 투명 디스플레이, XR용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는 산업

④ 바이오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바이오의약품 산업 : 세포 배양·정제 기술이 적용된 항체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 :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이 적용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